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결과보고

2001. 3. 16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1년 2월 27일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2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3월 13일(제185회 임시회 1차교육사회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(복지환경국장 박환규)

가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 기금을 보다 안정정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관리 · 운용
 - 기금은 도금고에 기금관리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· 운용
 -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환경국장,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함.
-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대여
 - 시설개선융자사업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)
 - 융자금의 대여
 -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대출업무를 취급
 - 융자금 대여시 약정체결
- 기금운용계획 · 결산보고
 -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도의회에 제출
- 시행규칙
 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범수)

- 상위 법령인

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,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

- 도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도민 영향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다만,
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의 수정과
-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
- 결산 및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
-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
-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나. 수정주요골자

-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 자구 수정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“기금계좌”를 “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으로 함.(제4조)
-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“출납폐쇄후 80일이내”의 기간을 명시함.
(제6조)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-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-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,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2. “대여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기금을 금융 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,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

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·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융자사업)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융자대상, 융자신청 서류, 융자한도,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융자금 대여)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매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| | |
|----|--|
| 의안 | |
| 번호 | |

제안년월일 : 2001. 3. 16

제 안 자 : 황태모의원

1. 수정이유

-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
-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
-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
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 자구 수정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“기금계좌”를
“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”으로 함.(제4조)
-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“출납폐쇄후 80일이내”의 기간을 명시함.
(제6조)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1조중 “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”
“식품위생 및 도민 영향수준의 향상을”으로 한다.
- 안 제3조 1항중 “도금고에”를
“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”로 한다.
- 안 제6조 제1항중 “기금결산보고서”를
“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”로 한다.
- 안 제6조 제2항중 “매회계년도마다”를
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”
로 한다.

수정동의 신·구 대비표

| 원 안 | 수정동의안 |
|-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<u>영양수준을</u>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<u>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</u>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|
| <p>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도금고에</u>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 | <p>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<u>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</u>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 |
| <p>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<u>기금결산보고서</u>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도지사는 <u>매회계년도마다</u>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<u>출납폐쇄후 80일</u> 이내에 <u>기금결산보고서를</u> 작성하여야 한다. ②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</u> <u>매회계년도마다</u>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